

국립보건원고시 제 3 호(1983. 6. 21)

# 식품 및 첨가물 자가품질기준 및 규격의 검정기준

## 調 査 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 및 첨가물에 대한 자가품질기준 및 규격의 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국 립 보 건 원 장

###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83. 7. 1.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자가규격 및 기준은 이 고시에 의하여 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접수된 자가규격 및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할 수 있다.

### 1. 자가품질기준 및 규격의 기재 사항

용어 및 기호 또는 일반적인 기재 요령은 식품위생법 제 6 조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한 식품등 및 식품첨가물의 규격 및 기준(이하 “공전”이라 한다)에 준한다.

나. 기재 항목 및 기재 요령은 다음과 같다.

기 재 항 목	기 재 요 령
(1) 제 품 명	제품의 명칭을 기재한다.
(2) 성분 및 배합비율	(가) 공전에 수재된 명칭을 사용한다. 다만 공전에 수재되지 아니한 성분 등의 경우에는 일반명칭을 사용한다. (나) 주성분을 먼저 기재하고 배합비율이 높은 물질부터 낮은 물질순으로 기재한다. (다) 배합비율은 백분율로 표시한다. 다만 백분율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역가, 단위 및 색가 등으로 표시한다.
(3) 기 원	공전에 수재되지 아니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기원을 기재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식품의 원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 조 방 법	(가) 위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당해 제품의 형상 및 특징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한다. (나) 제조공정 및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기 재 항 목	기 재 요 령
(5) 용도 및 사용량	(가) 식품 첨가물은 공전의 사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은 특수한 경우에 기재한다.
(6) 보존기준	제품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특수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온도, 습도, 광선, 포장 등의 조건 및 보존 기간을 기재한다.
(7) 성분규격 및 시험 방법	2. 기준 및 규격의 검정기준에 준하여 기재한다.

## 2. 기준 및 규격의 검정기준

### 가. 성분규격

품질관리상 필요한 성분규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다만 제품의 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따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1) 식품의 성분규격

항 목	규 격	
성 상	품질 파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색상, 형상, 냄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성 분 함 량	특성에 따라 조단백질, 조지방 및 기타 미량 영양성분 등을 설정한다.	
비 소 (ppm)	고체식품 및 조미료는 1.5 이하. 액체식품은 0.3 이하	
중 금 속 (ppm)	10 이하	
이 물 시 험	적합하여야 한다.	
첨 가 물	보 존 료	첨가한 경우는 공전의 사용 기준에 준하여 기재한다.
	산 화 방 지 제	
	인 공 감 미 료	
	타 알 색 소	
기 타	특성이 인정될 때 설정한다.	

#### (2) 첨가물의 성분규격

항 목	규 격
성 상	품질 파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색상, 형상, 냄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비 소 (ppm)	4 이하(다만 효소제는 3이하)
중 금 속 (%)	0.005 이하
타 알 색 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천연색소에 한함)
함 량	효소제, 비타민류 및 천연색소에 한하여 표시역가, 단위, %, 색가로서 단일제는 표시량의 100% 이상 혼합(회석)제는 표시량의 90% 이상
기 타	1. 특성이 인정될 때 설정한다. 2. 천연 첨가물(단일품목)은 공인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시험방법

- 1) 공전에 수재된 시험방법은 “공전에 준하여 시험한다.”로 기재한다.
- 2) 공전에 수재되지 아니한 시험방법은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기준 및 규격 제출상의 유의 사항

- 가. 검토의뢰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검토를 받은 기준 및 규격의 사본과 변경 사항에 관한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 식품의 경우에는 제조회사 또는 국내의 공인기관의 일반성분 분석표(특정성분이 있으면 이들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 라. 기허 검토를 받은 자가품질기준 및 규격으로서 포장단위의 변경 사항과 국내 생산품목으로서 동일 성분에 그 배합비율만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변화가 없을 때는 새로 변경 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4. 보완기간 및 회수

- 가. 검토의뢰서에 대한 보완 지시는 보완을 요하는 모든 사항이 종합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되 2회에 한한다.
- 나. 1회 보완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동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못할 때는 당해 보완 기간의 1/2 범위내에서 독촉을 하고, 동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거나, 2차 보완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한다.

5. 보 칙

접수된 검토의뢰서의 수정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토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할 수 있고 보완 등으로 품질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지시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식 품 } <input type="checkbox"/>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 <input type="checkbox"/> 식품첨가물 } <input type="checkbox"/>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		} 검토 의뢰서	처리기간 일
의뢰인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TEL :            )	
제조사	(4) 성 명		
	(5) 주 소		
(6) 제 품 명			
(7) 성분 및 배합 비율			
(8) 제 조 방 법			